

# IMO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 I. 일반사항

- 회의명 : IMO 제6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64th Session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기간/장소 : '12. 10. 1~10. 5(5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석자 : KST 녹색성장실 박한선 실장  
KST 정부대행검사실 김자훈 과장

## II. 주요 의제 목차

1. [의제 1] 의제 채택
2. [의제 2]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
3. [의제 3] 선박재활용
4. [의제 4]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5. [의제 5]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
6. [의제 6]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7. [의제 7] MARPOL 및 관련협약 개정사항 해석
8. [의제 8] OPRC 협약, OPRC-HNS 의정서 및 관련 협약 결의서 이행
9. [의제 9]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
10. [의제10] 수용시설의 부적절성
11. [의제11] 전문위원회 보고서
12. [의제12] 타 기구 작업 보고서
13. [의제13] 협약 이행 상황
14. [의제14]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15. [의제15] MARPOL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증진

16. [의제16]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증진
17. [의제17] 인적요소의 역할
18. [의제18] 상선에서의 소음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1	의제 채택 및 작업반 구성
------	----------------

- WG 1 : 선박재활용
- WG 2 :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 RG :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
- DG :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의제 2	선박평형수 내 유기생물체
------	---------------

의제 주요내용

- 평형수 관리장치 활성물질 사용에 대한 기본 승인 및 최종승인
- 평형수 관리협약의 적용시기 조정 검토
  - 평형수 관리장치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조선소의 부족으로 협약의 적용일자(B-3 규칙)의 조정이 필요하며, 23차 총회 결의서(2013년 말)를 통한 협약의 개정이 필요
- 평형수 관리장치의 self-monitoring 요건 표준화
  - 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 후 항만국 통제 검사시 발생 가능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형수 관리장치의 적절한 운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self-monitoring 요구조건의 표준화 작업 제안

- BLG 17차 의제문서로 제출 요청
-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 추가 및 승인시험관련 문서의 공개
  - 평형수 관리장치의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이 부족하여 승인계약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승인시험관련 문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형식승인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 제기

#### □ 논의 내용 및 결과

- 평형수 관리장치 활성물질 사용에 대한 기본 승인 및 최종승인
  - 최종승인(3건) : Ocean Guardian(덴마크), JFE BallastAce(일본), Smart Ballast(우리나라)
  - 기본승인(5건) : KTM-BWMS(우리나라), Ham-worthy Aquarius(네덜란드), Ocean Doctor(중국), HS-BALLAST(우리나라), GloEn-Saver(우리나라)
  - 승인불허(1건) : Dow-Pinnacle(싱가포르, 기본승인)
- 평형수 관리협약의 적용시기 조정 검토
  - MEPC 64에서는 관련 제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MEPC 65까지 통신반 활동을 통해 평형수 관리장치 탑재일정 요건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 협약개정을 위한 23차 총회결의서 채택을 위해 초안을 작성하여 MEPC 65에 제출될 예정임
- 평형수 관리장치의 self-monitoring 요건 표준화
  - 평형수 관리장치의 self-monitoring 요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안 문서를 BLG 17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제내용에 한하여 제출 기한을 2012. 12. 1까지 연기함

- 독일 측에서 문서 초안을 마련할 시, 우리나라에서 초안 검토 및 공동제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독일도 일정상 제출이 불투명함
-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 추가 및 승인시험 관련 문서의 공개
  - 우리나라, 독일, 노르웨이는 IUCN의 문제제기 사항을 반영하여 작업반 논의 기간 중에 현행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 및 공개문서 요건인 결의서 MEPC.175(58)의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개정 초안을 제시하고 BLG17에서 향후 더 논의하기로 함
- 협약 발효 전 증서 발행 및 평형수 관리계획의 승인
  - MEPC 63에서의 결정사항으로써 본회기 기간 중 별도의 논의없이 회람문서로 발행하기로 결정함(BWM,2/Circ.40)
    - 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이전에 협약의 발효 시기부터 유효한 IBWM 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
    -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평형수 관리계획서를 선상에 비치하면서 최대 3개월까지 항해를 허가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함께 허가

#### □ 향후 계획

- 평형수 관리장치의 형식별 self-monitoring 요건 표준화관련 내부 논의 및 독일정부와 공동 문서 제출 협력 필요(BLG 17 또는 BLG 18)
- 형식승인증서 및 승인시험관련 문서의 대외

공개를 위한 web-site 구축 및 자료 등재와 해당 정보제공용 문서제출 필요(MEPC 65)

**의제 3 선박재활용**

□ 의제 주요내용

-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선박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PSC Guidelines)에 대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의 보고서와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Survey and Certification Guidelines)에 대한 회기간 통신작업반의 보고서 논의 관련
  - 상기 두 지침서는 MEPC 63차 회의 후 구성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로 금번 회기의 채택을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FSI 21차로 항만통제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달될 예정임
- 선박재활용협약으로 적용 가능한 유해물질의 경계조건 및 면제 관련
  - 석면(1.0% 또는 0.1%), 회로기판에 포함된 납(50ppm) 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는 특정 물질 및 이를 반영한 유해물질목록 작성지침서의 개정을 제안

□ 논의 내용 및 결과

- 작업반의 검토 후,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선박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PSC Guidelines) 및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Survey and Certification Guidelines)가 채택됨
  - 선박재활용협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취지하에 불필요한 문구와 요건을 삭제하고, MEPC 63차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현존선에 대한 요건의 해석”은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지침서의 4항으로 적절히

반영되었음

- 선박재활용협약으로 적용 가능한 유해물질의 경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기간 통신작업반이 결성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참가 등록 완료함

□ 향후 계획

- 석면의 경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통신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석면검출에 관련된 연구기술력 및 시설을 고려하여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 필요

**의제 4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 의제 주요내용

- MARPOL Annex VI 연료유의 이용가능성
  - 2020. 1. 1부터 적용되는 전 세계 연료유의 황함량 0.5%이하 규제에 대해서 2018년까지 전 세계적인 연료유의 이용가능성을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료유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2015~2016년 연료유 이용가능 시나리오의 검증에 활용해 보자는 제안과 사전평가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됨
- SCR을 장착한 엔진의 인증 지침서 개정
  - Scheme B에 따라 육상 및 선상에서 각각 NOx 저감효율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할 경우, NOx 저감효율 수식의 분자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수식의 분모인 엔진에서 배출되는 NOx의 양은 엔진 부하조건, 연료유의 성상 및 대기조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EUROMOT에서는 해당 변화로 인한 편차가 승인기준치인 5%를 초과하여 10%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제안함

$$\eta = \frac{C_{inlet} - C_{outlet}}{C_{inlet}} \times 100 \rightarrow \eta = \frac{C_{inlet} - C_{outlet}}{C_{inlet, pre-certification}} \times 100$$

$C_{inlet}$  : SCR 입구에서의 NOx 농도(ppm)

$C_{outlet}$  : SCR 출구에서의 NOx 농도(ppm)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이전 및 협력 증진에 관한 MEPC 결의서 초안
  - MEPC 62에서 선박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이전 및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MEPC 결의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MEPC 63에서 별도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함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담긴 각각의 문안을 동시에 언급하여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함
  - MEPC 결의서 초안 주요내용
    -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수반
    - 위원회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감시
    -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그룹(AHEWG-TT)을 구성하여 개도국과 국제해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 체제 구축
    - 개도국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국내법 개발,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 논의 내용 및 결과

- MARPOL Annex VI 연료유의 이용가능성
  - 예비연구의 진행이 더 진보한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지되었으나 추가적인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MEPC 66차에 추가 문서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으로 재논의하기로 함

- SCR을 장착한 엔진의 인증 지침서 개정
  - 대다수의 국가는 MARPOL 부속서 VI의 제13 규칙을 개정하자는 EUROMOT의 제안은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지지하지 않음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이전 및 협력 증진에 관한 MEPC 결의서 관련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6의 제4장('11. 7, 채택) 제23규칙(기술이전 및 협력증진)에 따른 "기술이전" MEPC 결의서 채택 실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KP)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CBDR)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IMO의 비차별 적용원칙(NMFT)을 주장하는 선진국이 대립
    - MARPOL 부속서 6의 제4장(온실가스)의 이행('13. 1, 발효)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에 대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을 "선진국은 IMO 회원국"을 주장, "지적재산권을 고려하여 상호 동意的한 규정과 조건하에서 자발적에 바탕을 둔 IMO 회원국"이 제시되었으나 합의 실패
  - 이번 회기 작업결과를 "임시합의문(Interim Agreement)" 형태로 인정하여 MEPC 65 ('13. 5) 회의에서 재논의

□ 향후 계획

- 기술이전 결의서 채택과 관련하여 개도국은 빠른 기술이전과 기금 조성 및 지원을 통한 실질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기술이전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IMO의 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을 통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선 및 해운산업 강국으로 IMO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이전에 있어서 개도국으로 수혜국이 아니라 지원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차기 회의시 다음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파악
  - 결의서 적용원칙(CBDR vs NMFT)에 대한 입장 정립
  - 기술이전 작업반 참석 전문가 검토(부속서6의 4장에 따른 기술이전 영향평가 및 기술이전 목록 작성)
  - IMO 기술협력프로그램(ITCP) 지원 방안 검토

**의제 5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

의제 주요내용

- MEPC 63차에서는 MBM-EG 작업의 후속조치로서 시장기반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진행과정을 감독할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만들기로 하였음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해당 논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기반규제 추가 영향평가를 위한 위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MEPC 63차에서 협의되었던 위임사항 초안을 보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립·역할 등에 관한 의제문서를 제출함
- UN 기후변화협약 회의 결과 관련
  - 2003년 IMO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서 A.963 (23)(IMO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및 MEPC 63/23 문서에 의거하여, IMO 사무국은 MEPC 63차 회의 결과를 2012년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UNFCCC

- 산하 기구 협의회에 보고함
- IMO 사무국이 보고한 UNFCCC 산하 기구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36)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36)
  -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AWG-KP 17)
  -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AWG-LCA 15)
  -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1)
- 금번 개최된 UNFCCC 산하 기구 협의회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7차 COP(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합의서 및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및 검토하고, 18차 도하 COP 총회(2012년 11월 개최)에서 채택될 교토의정서 개정문 준비
  -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이행 기간 논의
- 효율인센티브제도(EIS) 수정안에 대한 협약 초안 관련
  - EIS 협약 초안은 온실가스기부금 제도(GHG Fund)와 유사하므로 덴마크 등이 이미 제출한 GHG Fund에 관한 협약 초안(GHG-WG 3/3/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EIS와 GHG Fund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감축목표(target line 또는 cap) 설정 반대 : 일본은 GHG Fund에서 제안사항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징수된 기부금 수익을 통해 해운분야 외부로부터 CDM 배출권과

- 같은 크레딧을 구매하여 감축목표를 초과한 배출량을 상쇄(offset)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제해운 배출량 감축이 아니며 해운부문의 자금의 외부유출이 우려됨
- 인센티브 제도의 유무 : GHG Fund에서는 고정요율의 기부금을 모든 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EIS에서는 EEDI 규제 값을 만족한 선박은 기부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최초 제안된 EIS 제안사항 대비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부금 수준 설정 방법 : 최초 EEDI 규제 값을 만족하지 못한 수준에 따른 기부금의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모든 경우에 고정요율의 기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 현존선에 대한 EEDI 적용 : 다수의 회원국의 현존선의 EEDI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EEDI 규제 값 적용은 신조선에만 적용하고 이에 따라 기부금 납부 면제도 신조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하고 모든 현존선은 신조선에 적용되는 고정요율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납부해야 함
  - 기부금납부면제증서 : GHG Fund에서 요구하는 기부금 납부여부 검증을 위한 연료유공급 확인서(BDN)와 함께 EIS에서는 EEDI 규제 값을 만족한 신조선을 위한 기부금납부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마련하여 기국검사(flag State survey) 및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에서 확인하도록 함
-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최신화에 관한 개요(안) 관련
- 제2차 IMO GHG Study 2009에서 산정된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자료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출량 전망에 사용된 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작업은 사무국이 전반적인 사항을 편성하고 회원국, 정무간 기구 및 비정무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함
  - 필요한 경우, 사무국은 국제해운 연료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과 같은 업무를 전문 컨설팅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작업의 일정안은 다음과 같이 계획됨
    - 작업시작 : 2012년 8월
    - 전문가 워크숍 : 2013년 초
    - 보고서 초안 : MEPC 65 (2013년 7월)
    - 최종 보고서 : MEPC 66 (2014년 3월)
- 방법론 관련
- 제2차 IMO GHG Study 2009에서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사항의 재검토 및 최신화
  - 방법론 및 가정 사항은 2013년 초에 개최된 전문가 워크숍에서 논의 및 결정
  - 배출량 추정은 top-down 방법론(연료판매량, 해운운송 수요량)과 bottom-up 방법론(선박 활동량)을 통해 산정하고 상호 비교
-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관련
- 인벤토리에는 100GT 이상의 국제해운 선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물질을 다음과 같이 포함
    - 온실가스에는 UNFCCC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인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s, PFCs, SF<sub>6</sub>를 포함
    - 기타 물질에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NO<sub>x</sub>, NMVOC, CO, PM, SO<sub>x</sub>를 포함
    - 배출량 계산을 위한 배출계수는 제2차 IMO GHG Study 2009 표 3.6의 배출계수 또는 기타 최신화된 배출계수를 사용

- 인벤토리는 2008부터 2012년까지 연간 배출량을 포함
-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미국의 제안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 관련
  - 기존에 제안한 미국의 선박효율크레딧거래제도 (SECT)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내용, 특히 단계별 규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단계 : 데이터 수집과 베이스라인 및 규제 기준 설정
  - \* IMO는 “전체획득효율(attained overall efficiency)” 기준 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선박 으로부터 수집하고 1 단계에서 각 선박은 “획득 기술효율(attained technical efficiency)” 결정을 위하여 선박 설계와 엔진 및 장비의 상태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
  - 2 단계 : 시범단계 및 rating 프로그램 제정
  - \* Rating 부여 기준은 획득효율기준 대비 효율 달성 수준에 따라 A, B, C rating으로 구분 되어 부여되고 시범단계 시행 이후, IMO는 검토를 통하여 규제기준 조정 필요성을 결정 및 크레딧 거래제도와 같은 유연성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함
  - 3단계 : 요구효율제도
  - \* 3 단계에서 각 선박은 B 이상의 rating을 획득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음
  - ※ 미국은 Rating 획득 여부에 따른 보상 및 벌칙에 대해서는 본 문서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만, 자신들이 예전에 제안하였던 크레딧 거래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의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선박 에너지효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결의서

논의에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모든 사항을 MEPC 65차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의제 6    협약 개정 검토 및 채택

□ 의제 주요내용

- IBC Code 개정안
  - IBC Code의 제17장(IBC Code 적용 제품의 최소요건 요약), 제18장(IBC Code 비적용 제품 목록), 제19장(산적운송제품 색인목록표)의 주기적인 개정안이 제출
  - 노르웨이 및 영국은 동 개정안의 채택 전, 오기 및 불일치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공 하였으며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채택하여 주기를 제안

□ 논의 내용 및 결과

- 관련 작업반의 검토 후, 다음의 사항들이 반영 되어 금번회기에 채택됨
  - 전기설비 및 온도분류의 요건이 누락된 화물의 정보를 추가로 보완함
  - 특정화물의 최소요건에 대한 최신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여, 잠정평가물질 자료를 참고하여 최신화 함
  - IBC Code의 주석(m)에 언급된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기름 및 어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 85% 이하의 포름산은 인화성 화물이 아님을 주목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요건이 IBC Code 2012 개정안으로 제안되어 삭제되었지만, 99%이상의 농도 및 인화점 60도 이하를 지나는 포름산이 운송되고 있는 산업계의 관례를 고려하여, 85%를 초과하는 기존의 포름산에 대한 운송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

## □ 향후 계획

- MSC(해사안전위원회) 91차(2012. 11. 26~30)에서 채택 후, 2014년 7월 1일 이후로 발효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화물목록 및 최소요건의 개정안을 해양환경관리법의 관련조항에 반영 필요

## 의제 7 MARPOL 및 관련 협약 개정사항 해석

## □ 의제 주요내용

- MARPOL 부속서 6 제4장의 통일해석(SEEMP의 비치시기 관련)
  - 현존선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SEEMP) 비치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본선비치”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첫 번째 IAPP 중간 및 정기검사 시까지 본선비치”에 대한 선택사항을 제시
- 선박평형수 탱크로 오수 또는 중수를 저장하기 위한 MARPOL 부속서 4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적용 관련
  - 오수 및 중수의 평형수탱크 유입가능성에 대한 논의사항으로 MARPOL 부속서 4의 개정안과 선박의 일반적인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수, 오수 및 평형수 저장에 관련된 사례를 근거를 제시함
- IOPP 증서추록의 소각기 용량 기록 관련
  - 영국 및 IACS와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로서, IOPP 증서와 소각기 형식승인 증서에서 서로 다른 소각기 용량표기에 기인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IOPP 증서에서 소각기 용량단위의 삭제를 요청
- ISPP 증서에 기재되는 최대탑재인원 관련
  - ISPP 증서에 기재되는 최대탑재인원은 본선에 설치된 오수처리 및 저장탱크의 용량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

- 기관이 없는 비자항 무인바지선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 관련
  - 해양환경으로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오염원이 없으므로 MARPOL 협약의 적용이 불필요한 비자항 무인 바지선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련된 요건을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줄 것을 제안
- 개정된 MARPOL 부속서 5의 이행 관련
  - MEPC 64/7/8은 개정된 MARPOL 부속서 5를 준수하기 위한 고체산적화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2년의 유예기간동안 화주의 자체적인 화물의 독성평가를 허용하는 잠정지침 및 적절한 육상 수용시설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마일 밖에서 배출가능을 언급하는 지침을 제공함

## □ 논의 내용 및 결과

- 선박에너지열효율관리계획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IAPP 중간 및 정기검사 시까지 본선에 비치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선박평형수 탱크로 오수 또는 중수를 저장하기 위한 관련협약의 개정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추후 논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 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함
- IOPP 증서의 소각기 용량단위의 삭제는 합의를 이루었으며, 작업반에서 증서개정을 통하여 금번 회기에 승인 및 차기 MEPC 65차에 채택예정임
- ISPP 증서의 최대탑재인원 관련하여, 오수처리장치 형식승인 증서에는 승선정원이 아닌 “Designed Hydraulic loading”을 언급하고 있으며 오수저장탱크의 경우 인원에 대한 용량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없으므로 오수처리장치 형식승인요건의 추가적인 개정이 수반될 수 있음을 우리나라가 피력하여 당사국의 지지를 이끌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추가의 논의를

거절하였음

- 비자항 무인바지선 관련은 대다수의 당사국으로 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MARPOL 협약의 각 부속서에 대한 요건을 기술 및 법률적인 문제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FSI(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21차로 전달할 예정임
- 개정된 MARPOL 부속서 5의 이행 관련은 합의를 이루어 제안된 회람문서의 승인을 통해 MEPC.1/Circ 문서로 제공될 예정이며, 적절한 항만수용 시설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12마일 밖에서 화물잔류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지침서 초안은 해양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서의 승인을 거절함. 단, 협약당사국은 적절한 수용시설의 마련을 촉구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승인함

□ 향후 계획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시기 관련 하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법 제 개정 시 반영 필요함
- 비자항 무인바지선 관련은 FSI 21차로 전달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및 추후 위원회의 논의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소각기 용량의 단위삭제는 금번회기에 승인 및 차기 회기에 채택되어 발효날짜가 지정될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적선의 협약증서 개정 및 교체발행에 대한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의제 8	OPRC 협약, OPRC-HNS 의정서 및 관련 협약 결의서 이행
------	--------------------------------------

□ 논의 내용 및 결과

- 제13차 및 제14차 OPRC-HNS TG회의 결과

보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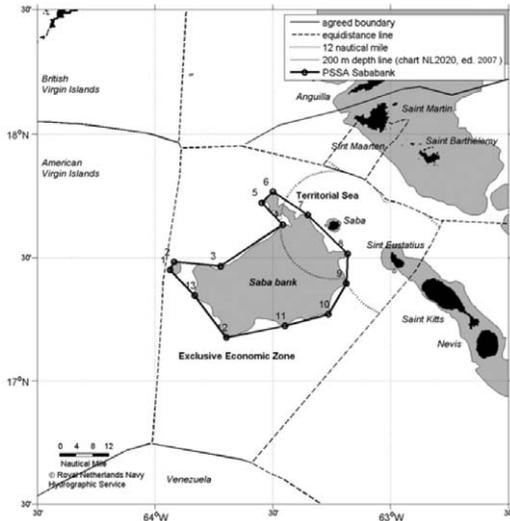
- HNS 사고의 법적 및 행정적 측면의 다루는 화학오염사고 매뉴얼
- IMO의 유처리제 사용 지침(Part I 및 II)
- IMO의 해상에서의 현장소각 지침
- 수중 침적유 평가 및 제거기술에 관한 실무 지침
  - ※ 상기 매뉴얼 및 지침서는 본 제64차 회의에서 최종화 작업 및 승인을 위해 제65차 MEPC에 제출예정
- 대형오염사고 시 국가지원 제공에 관한 지침서 검토에 진전이 있었음
- 2013년 OPRC-HNS TG회의 의장과 부의장 으로서 스웨덴 Mr. Alexander von Buxhoeveden과 한국의 해양환경관리공단 의 서우락 과장이 재선임 됨
- ROPME 해역에서의 해상 긴급 대응, 구난 협력체 관련
  - ROPME 해역에서의 해상 긴급 대응, 구난 단체의 실행에 관한 정보 소개 및 검토
  - 많은 대표단에서 ROPME 해역에 입항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새로운 징수제도에 대해 언급
  - 몇몇 국가에서는 부과하고자 하는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고, 또한 부과하는 비용이 서비스 제공에 비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 표명
  - ROPME의 참가인은 서비스 요금이 다른 항만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해운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위원회는 동 사안을 MEPC Circular로서 회원국과 기구에 회람할 것을 요구
- 국가 및 지역 HNS 긴급계획 워크숍 관련

- Resolution A.949(23)에 따라 지원이 요구되는 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지침의 개정이 제기되었으나, 논의 결과 이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함
- 침몰 및 조난 선박으로부터 효율적 기름회수 제고를 위한 비상 Heating 기술 관련
  - 위원회는 중국에서 제출된 정보문서(MEPC 64/INF.11)로서, 조난선박으로부터 기름 회수를 위한 새로운 기술 정보를 언급
- M/T Stolt Valor 사고 정보 공개 관련
  - Netherlands 및 ICS, INTERTANKO, P&I Clubs은 상기 사고는 정보로 제공된 사실과 다름을 언급
  - 선원의 구조에 대한 소홀, 안전과 해양환경 보다 비용을 걱정하는 P&I 및 해난 구조자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또한, Resolution A.949(23) Guidelines on place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지원이 필요한 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지침) 및 Resolution A.987(24) Guidelines on fair treatment of seafarers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해양 사고 발생 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 ITF, ICS, INTERTANKO, IPTA 및 BIMCO는 선장과 기관장의 억류와 피난처 지연 확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MEPC 62에서는 네덜란드 영토인 북동 캐리비안 해역에 위치한 사이바뱅크를 특별 민감해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네덜란드에 구체적인 보호조치(안)을 NAV 58로 제출할 것을 권고함
- NAV 58에서는 사이바뱅크에서 요구되는 보호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
  -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에 대한 통항금지 구역 설정
  - 모든 선박에 대한 정박금지구역을 설정(통항 금지구역과 정박금지구역은 동일)
  - 네덜란드는 MEPC 64/9 문건으로 상기 NAV 58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주목과 함께, MSC 91에서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결의서 초안 검토를 요청함
- 비공식 기술그룹 회의결과 해당지역의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과학적 특성으로 사이바뱅크는 국제해운활동에 대하여 취약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사이바뱅크 특별민감해역 지정에 관한 결의서 초안을 완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함
- 위원회는 사이바뱅크 특별민감해역 지정에 관한 결의서 초안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4개의 부속서로 구분된 결의서를 IMO 회원국이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
  - Annex 1(사이바뱅크 특별민감해역으로서의 사이바뱅크 상세)
  - Annex 2(생태학적, 사회경제적, 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 Annex 3(국제해운활동에 의한 취약성)
  - Annex 4(총톤수 300톤 이상 진입금지 구역 및 모든 선박에 대한 정박금지구역 상세)

의제 9	특별해역과 특별 민감해역의 식별 및 보호
------	------------------------

논의 내용 및 결과

- 사이바뱅크(Saba Bank) 특별민감해역 지정에 관한 NAV 58논의결과 관련



《통항 및 정박금지구역 설정》

의제 11 전문 위원회 보고서

- BLG 16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승인
  - ESPH 작업반 결과에 관한 전문위원회 결정의 승인 및 차기 ESPH 작업반 회의 개최('13. 10)를 정함
  - 석유와 바이오연료의 혼합운송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승인함
  - 레저선박을 통한 침입성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지침 초안을 승인함
  - 북극지방을 향해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블랙카본의 영향과 관련한 의제를 BLG 17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DE 56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승인
  - 극 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Polar Code)의 제정을 주목하고 MSC 91에 Polar Code의 강제화 이행에 대한 논의를 요청
  - CAS(Condition Assessment Scheme) 및 2011 ESP 개정초안이 MEPC 65차에서 채택

- 되도록 회람을 요청함
- 오수처리설비에 대한 2012년 지침을 기본으로 하는 MEPC 159(55)의 개정(오수처리설비 표준 지침)결의서 초안 채택
- 소각기의 용량의 한도를 1,500kW에서 4,000kW로 증가시키는 결의서 MEPC 76(40)의 개정안(소각기의 표준 사양)을 승인

- STW 43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승인
  - 회사의 내부 심사자의 범위, 자격기준, 자원, 인원 및 책임과 관련한 ISM 코드 이행 지침(MSC-MEPC.7/Circ.5)의 개정안을 승인함
  - 회사가 선상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선상비상계획 통합시스템 구성에 대한 지침(Res.A.852(20))의 개정안을 승인함

- FSI 20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승인
  - 선박이 보유해야 되는 증서 및 서류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차기 FSI 21에 요청함
  - Web-site의 IMO-DOCS 문서를 track changes(변경추적) 방식을 적용하여 협약개정본의 사본 요청 및 채택 시 문서의 시간제한을 설정하도록 법률사무소에 요청함
  - 제28차 총회에서 채택을 위한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III Code)의 개정 초안 승인

- 오수처리장치 배출수 기준 및 성능시험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정 관련
  - DE 56에서 영국이 제기한 희석보완인자(Qi/Qe)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 제출
    - 제출된 의제 대해 이견 없이 '12 오수처리설비 표준지침의 개정안에 희석량을 반영하는 희석

보안인자(Qi/Qe)를 관련 개정 지침에 명확히 반영함

RO Code 개정초안에 대한 코멘트 관련

- FSI 전문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RO 코드 개정안과 관련하여 RO의 기록관리, 의사소통, 교육 및 자격요건을 제안함
- RO의 책임범위를 언급하는 “Liability”와 관련하여, 파나마는 법률적인 문구는 기술적인 Code에 언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동 항목이 언급된 Appendix 3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유한책임이 RO Code에 언급될지라도 국가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일부 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Option 2의 주석을 선택함
- 또한, 기록관리, 의사소통, 교육 및 자격요건에 관한 IACS의 의견을 지지하고, 이를 반영한 관련 작업반 결과를 최종 승인함

특별해역에서 오수처리장치를 설치한 여객선이 배출하는 오수의 부영양화 표준 제안 관련

- 향후 오수처리설비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여 '12 오수처리설비 표준지침 개정안의 질소와 인에 대한 규제기준 완화 요청
- '12 오수처리설비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및 시기는 발틱해를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신조선은 '16. 1. 1, 현조선은 '18. 1. 1부터 적용하도록 함
- 배출수의 질소와 인의 규제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구 분	기 준 치
총 질소(N)	20 Qi/Qe mg/l 또는 최소 70% 감소
총 인(P)	1.0 Qi/Qe mg/l 또는 최소 80% 감소

※ Qi : 총 유입수량, Qe : 총 배출수량

- 다만, MEPC 67('14. 10)에 관련 작업반(RG)을 구성하고 개정된 질소와 인의 기준치에 적합한 오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사례를 고려하여 상기 기준을 재논의 하기로 결정함

**의제 12 | 타 기구 작업 보고서**

제62차 기술협력위원회 회의결과 관련 검토

- 지난 2년간의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및 외부 재정지원을 받는 주요 프로젝트의 해양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협력 활동들을 주목함

UN의 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관련 검토

- UN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논의된 다음 사항을 주목함
  - 해사안전 및 환경관리
  - 선박의 에너지 효율 증진
  - 해사분야의 신기술 및 기술혁신
  - 해사교육·훈련 및 인프라의 개발
  - 해상보안 및 해적퇴치 활동 등
-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해사 개발 - 포괄적인 개발과 녹색 성장에 대한 해사 운송의 공헌”을 통해 향후 IMO의 해사개발을 공유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노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림

제108차 이사회(Council) 결과 관련 검토

- 다른 IMO 회의체에 의한 상호참조를 용이하게 하고, 기존 문구의 불필요한 재생산 및 번역을 피하기 위해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에 “Action requested of other IMO bodies”라는 새로운 section을 추가함을 주목함
- 2013년도 세계해사의 날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 것을 주목함

-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개발): IMO's contribution beyond Rio +20"

□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른 spoilt cargo(손상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그룹 회의 결과 관련 검토

- 손상된 화물과 관련한 LC-LP/MEPC 공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의제 13 | 협약 이행 사항**

- 협약 이행 상황(2012년 6월 14일 현재)

협 약	발효요건	비준현황	적 용 일
MARPOL 73/78 (I & II)	15개국 세계톤수 50%	151개국 세계톤수 99.20%	1983. 10. 2
MARPOL 73/78(III)	15개국 세계톤수 50%	136개국 세계톤수 96.59%	1992. 7. 1
MARPOL 73/78(IV)	15개국 세계톤수 50%	129개국 세계톤수 88.65%	2003. 9. 27
MARPOL 73/78(V)	15개국 세계톤수 50%	143개국 세계톤수 97.47%	1988. 12. 31
MARPOL 73/78(VI)	15개국 세계톤수 50%	68개국 세계톤수 93.29%	2005. 5. 19
1990 OPRC 협약	15개국	104개국 세계톤수 70.08%	1995. 5. 13
2000 OPRC-HNS 프로토콜	15개국	28개국 세계톤수 38.62%	2007. 6. 14
2001 AFS 협약	25개국 세계톤수 25%	60개국 세계톤수 79.11%	2008. 9. 17
2004 BWM 협약	30개국 세계톤수 35%	35개국 세계톤수 27.95%	-
2009 HONG KONG 협약	15개국, 세계톤수 40%, 비준국가의 10년동안 재활용선복량이 3%이상	-	-

**의제 16 |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기술협력프로그램**

-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의 활동상황 보고 관련
  -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한 목적인 ITCP를 통해 각국에 기술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12년 상반기 활동상황을 보고
  - 위원회는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과 관련한 활동사항을 주목하고 이를 통한 IMO에 대한 기여를 상기하였으며, 회원국들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함

**의제 19 | 위원회 및 부속기구 작업계획서**

- 2014~2015년에 개최될 각 위원회의 회의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논의 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65)는 '15. 5.13~17에 개최하기로 동의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함

구분	작업반	통신작업반
1	평형수 관련[RG]	선박재활용 관련
2	대기오염과 에너지 효율 관련[WG]	선박의 에너지 효율관련
3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 관련[WG]	NOx Tier III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관련
4	협약 개정관련(DG)	평형수관리협약 이행관련

- 차기 위원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동의하고 이사회에 요청함
  - OPRC/HNS Technical Group(차기 위원회 회의 전)
  - ESPH Working Group('13. 10)

의제 22	기타사항
-------	------

- 2012 여수 엑스포 및 “대양협정” 발표
  - 2012년 대한민국 여수에서 개최되었던 여수 엑스포와 관련된 정보와 유엔사무국이 해사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대양협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2012년 5월 12일~8월 12일 대한민국 여수에서 개최한 해양박람회에 UN 전람회 및 IMO 전람회 개최함을 알림
  - “대양협정”을 발표함으로써 Rio+20을 근거로 한 “우리가 원하는 바다”, “번영을 위한 건강한 바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IMO는 물론 UN 및 모든 전문가 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알림

※ (선박평형수 관련) 이번 회의의 선박평형수 관련 논의에서 ICS는 조선소 부족 및 많은 선박의 단기간 안에 설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약의 적용지연 필요성에 대한 의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파나마, 바하마, 라이베이라 등 주요 편의치적국가 및 다수의 국제선주단체 등은 이를 지지하고 있음에 따라 통신반 활동에 참여하여 협약개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협약이행을 찬성하는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 유럽조선협회(CESA)에서는 유럽지역 선박에 평형수 관리장치 탑재를 위한 충분한 조선소가 있음을 표명함

※ (선박온실가스 관련) 선박온실가스와 관련한 기술이전에 대해 개도국은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선진국은 점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또한, 특수추진방식 LNG 선박,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및 여객선에 대한 기술적 논의와 IMO의 시장기반규제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함